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우형찬 의원 발의)

의안 번호	3039
----------	------

발 의 년 월 일: 2022년 01월 20일
발 의 자: 우형찬 의원(1명)
찬 성 자: 김정태, 김제리, 김호진,
박기열, 박상구, 박순규,
송아량, 신정호, 양민규,
오현정, 이승미, 이은주,
이현찬, 이호대, 임만균,
추승우 의원(16명)

1. 제안이유

○ 서울시(문화본부)는 기 보유한 미디어 자원과 신규 자원을 발굴하여 시민들에게 늘 새로운 미디어아트 예술체험기회를 제공하고 문화도시 서울의 이미지 형성에 기여하고자 ‘미디어아트 서울’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음

- 미디어파사드를 활용 야간에 다양한 볼거리와 야간명소(디지털 옥외 시민문화공간) 조성 등 관광자원화

- 지역상권 활성화 등 도시경제 측면뿐만 아니라 특색 있는 도시 이미지 형성으로 서울시의 국제 경쟁력 강화

- 공익광고 예술작품 콘텐츠 상영 시정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등 공공미디어로서 활용

- 세계 주요도시들은 조명을 이용하여 주요 관광지에 야간 볼거리를 마련하고 야간명소로 활용하여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고 있으며, LED 워터보드, 미디어파사드 등 조명을 활용하여 야간에 다양한 볼거리로 많은 관람객의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며 도시조명은 관광자원으로 도시경제뿐만 아니라 도시의 이미지 형성과 국제 경쟁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사례 : New York 타임스 스퀘어, 오사카 도톤보리 · 신세계 등)

-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하는 미디어파사드의 개념은 “건축물과 조명이 일체화된 방식으로 LED조명, 빔 프로젝트 등을 이용하여 밝기, 색상 등을 조절하고 빛의 움직임을 가능케 하는 조명방식”으로 정의되어 있으나, 이는 장식조명 수준의 구시대적 정의로써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첨단기술과 스마트 미디어 시대로의 변화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장식조명 이상의 콘테츠에 대한 문화적 속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으므로 일반적인 장식조명 관련 용어와 차별성을 고려하여 미디어파사드의 정의를 ‘건축물과 조명이 일체화된 방식으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여 도시의 문화적 요소로서 의미 있는 그래픽, 문자, 이미지 등을 표출하고 소통하는 미디어 기기’로 발전하는 근원적 기술을 명시하고 문화와 소통을 강조하는 개념으로 용어의 정의를 변경해야 함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12조에 의하면 국내외 행사, 축제 또는 관광진흥 등을 목적으로 한정된 기간 동안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빛방사허용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법 제12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빛방사허용기준의 적용 제외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에 의한 ‘미디어파사드’ 설치와 운영은 ‘건축물 외관을 꾸미기 위한 조명’ 수준으로 현실성이 없고 규제 중심의 제도운영으로 ‘미디어아트 서울’ 프로젝트와 관련 산업발전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으며, 공공시설인 중앙버스전용차로의 버스정류소는 예산절감을 위해 민자사업으로 시설물을 설치하고 있고 그 중 미디어파사드는 상업용도가 아닌 공공기여의 일환으로 설치되는 공공미디어 자원임에도 일반 장식조명의 빛방사허용기준(20~ 300cd/m²)을 적용하여 사실상 설치·운영이 불가능한 규제를 하고 있음.

특히, 조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실내용 디스플레이(모니터 등)의 경우 휘도는 300cd/m² 정도면 충분하나, 조도가 높은 야외 간선도로의 중앙버스전용차로에서는 그보다 휘도가 더 높아야 미디어아트 예술작품의 식별(시인성)과 감상이 가능하며, 미디어파사드의 첨단기술, 도시문화, 소통 측면에서의 기능의 발휘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별도의 기준 마련이 필요함

2. 주요내용

- 가. 첨단 기술의 발전과 스마트 미디어 시대로의 변화를 고려하여 미디어파사드와 관련된 근원적 기술을 명시하고 문화와 소통을 강조하는 개념으로 용어의 정의를 변경(안 제2조 관련)
- 나. 중앙버스전용차로의 버스정류소에 설치하는 미디어파사드를 빛방사허용기준의 적용 제외대상으로 지정하고, 세부사항은 좋은빛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안 제8조 관련)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다. 기타 : 신 구조문 대비표 별첨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미디어파사드란 건축물과 조명이 일체화된 방식으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여 도시의 문화적 요소로서 의미 있는 그래픽, 문자, 이미지 등을 표출하고 소통하는 미디어 기기를 말한다.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중앙버스전용차로의 버스정류소에 설치되는 미디어파사드를 영 제6조 제3항에 따라 빛방사허용기준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규칙 제4조에서 정한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있는 전광류 광고물의 빛방사허용 기준 이하의 범위 내에서 미디어파사드 설치 및 운영계획에 대하여 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3. (생략)</p> <p>4. “<u>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u>”이란 건축물과 조명이 일체화된 방식으로 LED조명, 빔 프로젝트를 이용하여 밝기, 색상을 조절하고 빛의 움직임을 가능케 하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를 말한다.</p> <p>5. (생략)</p> <p>제8조(빛방사허용기준의 적용 제외) (생략)</p> <p><u><신설></u></p>	<p>제2조(정의)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미디어파사드란 건축물과 조명이 일체화된 방식으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여 도시의 문화적 요소로서 의미 있는 그래픽, 문자, 이미지 등을 표출하고 소통하는 미디어 기기를 말한다.</u></p> <p>5. (현행과 같음)</p> <p>제8조(빛방사허용기준의 적용 제외)</p> <p>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p> <p>② <u>중앙버스전용차로의 버스정류소에 설치되는 미디어파사드를 영 제6조 제3항에 따라 빛방사허용기준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규칙 제4조에서 정한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있는 전광류 광고물의 빛방사허용기준 이하의 범위 내에서 미디어파사드 설치 및 운영계획에 대하여 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u></p>